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
- 집합건물 -

고유번호 1949-1996-197950



[집합건물]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1279 제410동 제2층 제203호

【 표 제 부 】 (1동의 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990년12월28일	경상남도 장승포시 옥포동 1279 제410동	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919.1㎡ 2층 919.1㎡ 3층 919.1㎡ 4층 919.1㎡ 5층 919.1㎡	도면편철장 제15책제818장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08월 27일 전산이기
2		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1279 제410동	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919.1㎡ 2층 919.1㎡ 3층 919.1㎡ 4층 919.1㎡ 5층 919.1㎡	1995년1월1일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2002년11월1일 등기 도면편철장 제15책제818장
3		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1279 제410동 [도로명주소]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 305	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919.1㎡ 2층 919.1㎡ 3층 919.1㎡ 4층 919.1㎡ 5층 919.1㎡	도로명주소 2011년12월1일 등기

[집합건물]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1279 제410동 제2층 제203호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표시번호	소재지번	지목	면적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. 경상남도 장승포시 옥포동 1279	대	21382.5㎡	1990년12월28일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08월 27일 전산이기

【 표 제 부 】 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표시번호	접수	건물번호	건물내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990년12월28일	제2층 제203호	철근콘크리트조 59.41㎡	도면편철장 제15책제818장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08월 27일 전산이기

(대지권의 표시)

표시번호	대지권종류	대지권비율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 소유권대지권	21382500분의 44440	1990년12월20일 대지권 1990년12월28일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08월 27일 전산이기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 (전 3)	소유권이전	2000년10월23일 제30505호	2000년10월23일 매매	소유자 정경용 710106-***** 거제시 옥포동 1279 덕산아파트 410동 203호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08월 27일 전산이기

[집합건물]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1279 제410동 제2층 제203호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2	압류	2008년4월14일 제17362호	2008년4월7일 압류	권리자 근로복지공단통영지사
3	2번압류등기말소	2008년12월4일 제53365호	2008년12월2일 해제	
4	가압류	2025년1월6일 제250호	2025년1월6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의 가압류 결정(2024카단 50832)	청구금액 금11,487,440 원 채권자 서민금융진흥원 110371-0017635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, 9층.10층.11층.12층.14층 (남대문로5가,그랜드센트럴)
5	4번가압류등기말소	2025년6월10일 제2884780호	2025년6월10일 해제	
6	임의경매개시결정	2025년6월24일 제3187519호	2025년6월24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 정(2025타경215 71)	채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110111-0995378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(남대문로5가)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 (전 2)	근저당권설정	1996년10월14일 제28753호	1996년10월8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15,600,000원 채무자 박태익 거제시 옥포동 1279 덕산아파트 410동 203호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 111235-000190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-3 (옥포지점)
1-1 (전 2-1)	1번근저당권변경	2000년11월7일 제32118호	2000년11월6일 확정채무 의면책적 채무인수	채무자 정경용 거제시 옥포동 1279 덕산아파트 410동 203호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

[집합건물]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1279 제410동 제2층 제203호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				의하여 1번 내지 1-1번 등기를 2002년 08월 27일 전산이기
1-2	1번근저당권이전	2003년4월28일 제16663호	2001년11월1일 회사합병	근저당권자 주식회사국민은행 110111-2365321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-1 (거제지점)
2	근저당권설정	2003년4월24일 제16105호	2003년4월24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33,800,000원 채무자 정경용 거제시 옥포동 1279 덕산아파트 410동 203호 근저당권자 거제축산업협동조합 194937-0000234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61-77 (옥포지점)
3	1번근저당권설정등 기말소	2003년4월28일 제16664호	2003년4월28일 해지	
4	근저당권설정	2010년11월10일 제49203호	2010년11월10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60,000,000원 채무자 정경용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1279 덕산아파트 410동 203호 근저당권자 사상농업협동조합 184436-0000197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710-1 (엄광지점)
5	2번근저당권설정등 기말소	2010년11월12일 제49578호	2010년11월12일 해지	
6	근저당권설정	2012년5월29일 제25657호	2012년5월25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110,400,000원 채무자 정경용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 305, 410동 203호 (옥포동, 덕산아파트) 근저당권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110111-099537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-21
6-1	6번등기명의인표시 변경		2011년10월31일 도로명주소	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(여의도동) 2013년10월8일 부기
7	4번근저당권설정등	2012년5월29일	2012년5월25일	

[집합건물]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1279 제410동 제2층 제203호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	기말소	제25661호	해지	

-- 이 하 여 백 --

관할등기소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

열 램 용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'기록사항 없음' 으로 표시함.
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열람일시 : 2026년02월26일 09시48분26초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의 사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949-1996-197950

[집합건물]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1279 제410동 제2층 제203호

1. 소유지분현황 (갑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정경용 (소유자)	710106-*****	단독소유	거제시 옥포동 1279 덕산아파트 410동 203호	1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6	임의경매개시결정	2025년6월24일 제3187519호	채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	정경용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6	근저당권설정	2012년5월29일 제25657호	채권최고액 금110,400,000원 근저당권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	정경용

[참고 사항]

- 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 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